

2026년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2026년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9. 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내 식품외식기업 대상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을 통한 기업 경영 부담 완화 및 정규직 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국내 식품·외식 기업 중, 2026년 1월 1일부터 공고 마감일('26.9.18) 까지 청년 인턴(내국인 限) 채용을 완료하고 채용 인원의 50%이상을 '26. 10. 31. 까지 정규직 전환 완료(예정)인 기업

* 단, 인턴 채용일이 2025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소급 적용 및 지원 인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수산업종 또는 완전자본잠식회사(자본총계마이너스) 지원 제외

*** '26년 동 사업 기선정 기업도 기업별 최대 한도 인원 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

채용/ 근무 요건	○ 해당 기업 최초 고용자 대상, 채용전환형 인턴 또는 수습 정규직(체험형 인턴 제외) ○ 근로기준법 상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26년 최저임금(10,320원/시간) 준수, 채용 인턴 4대 보험 가입 필수
청년 기준	○ 채용 시점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단, 인턴의 근무 사업장 소재 지방정부 조례에서 정한 '청년 연령 기준' 준용 가능 **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지원 불가하나, 졸업유예자 또는 예정자로 인턴십 종료 직후 정규직 근무가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졸업 또는 수료예정일 기재 필수)
식품 외식 기업	① 식품 제조·가공 ② 농식품 유통(도소매, 수출업체, 단체급식 식자재 업체 등) ③ 외식프랜차이즈(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정보공개서 등록 기업) ④ 식품서비스(농식품 구독서비스 제공기업 등)

2 지원내용

○ (모집기간) 2026. 9. 4.(금) ~ 2026. 9. 18.(금) 18시까지 / 2주간

○ (지원규모) 총 00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30명 이내

※ 하반기 잔여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채용 인턴 인건비 및 직무 교육비

- [인건비] 아래 지원 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인턴(수습)근무 기간에 대해 1인당 월 100만 원(최대 3개월) 인건비 일괄 지원

< 인건비 지원 대상 조건 >

- ① 채용(승인)인원 50%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
- ② 해당 기업에 최초 고용된 인턴,
- ③ 인턴으로 30일 이상 연속근무,
- ④ '26.10.31까지 정규직 전환
- ⑤ 정규직으로 30일 이상 고용유지

* 해당 기업 최초 고용 여부는 정산단계 제출서류 “22~26년도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를 통해 확인

** 1개월 미만 근무 월의 인건비 지급액 = 월 인건비 / 30일 × 실근무일

*** 중도 퇴사자 발생 시 승인 인원의 50% 이상 정규직 전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중도 퇴사한 인턴이라도 '30일 이상 근무' 시 실제 근무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원

- [교육비] 인턴 기초 소양 능력 제고 등을 위해 교육과정 수강 비용(100%) 지원

* 1인 1과정 수강 의무이며, 미수로 시 인건비 지원 불가 (교육비는 aT에서 직접 집행 예정)

○ (제한 사항) 아래의 경우는 지원 제한되며, 선정 이후 적발 시에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구분	내용
선정 중복 제한	aT 푸드테크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중복 수혜 불가 (중복 선정시, 식품외식산업 인턴십 지원하고 푸드테크기업 인턴십 선정에서 제외)
고용 제한	고용보험 이중 가입자(참가기업과 고용계약 체결일 기준) 사업기간(참가업체 인턴별 고용기간) 내 타 기관의 유사사업(인건비 관련 국비 보조 사업) 중복 참여자
지원 제한	완전자본잠식회사(자본총계마이너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수산기업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업참가 제한 조치 업체 인턴기간 30일 미만 또는 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 30일 미만 참가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 자

○ (운영절차) 기업 모집/선정 → 인턴 채용 → 사업 수행 → 지원금 정산

① 지원기업 모집/선정	② 참여 인턴 채용	③ 사업 수행	④ 지원금 정산
○ 모집공고 및 신청 기업 접수(FIS) ○ 제출서류 등 계량 평가 후 최종선정 ○ 사업 이행확약서 제출(기업, FIS)	○ 기업 자체 채용 규정에 따라 청년 채용(직무 무관) ○ 인턴 채용 결과 보고(→aT) 및 인턴 정보 전산 등록(FIS)	○ (기업) 인턴 연수 - 월 연수비 지급 - 인턴 교육 수강 ○ (aT) 기업별 채용/수행 현황 수시 모니터링	○ (기업) 인턴십 종료 후 정산 관련 서류* 제출(FIS) ○ (aT) 제출 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 인턴 활동일지, 인턴/정규직 근로계약서, 인건비 집행증빙, 세금·4대보험 완납증명서, 최근 5개년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교육수료증 등 aT가 요구하는 서류 (추후 별도 안내)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온라인 제출

○ 제출방법 : aT FIS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 - 지원사업 - 인턴십지원 - 식품기업 신청 바로가기

○ 제출서류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요구 가능)

구분	제출 서류	비고
공통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인감날인본
	신청기업 사전 체크리스트	인감날인본
	영업등록증/허가증/신고증	식품제조·가공일 경우 제출 必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必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발급분
	'24~'25년 12월 31일 기준 4대보험 산출내역서	-
	'24~'25년 재무상태표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
선택 (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본사 근무 인턴이 아닌 경우,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포함 제출 필요 (단, 동일한 법인등록번호)
	(가점+5점, 전년도 지원업체 限)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한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합시 우선선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원한 인턴의 지속 고용 비율이 사업공고일 현재 50% 이상 AgriX(농림사업정보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법인

4 심사 및 선정

□ 선정일정 : (심사/발표) 10월 초 * 선정 결과 별도 안내

□ 평가방법 : 서류평가 100%

□ 평가항목 : 재무건전성, 일자리창출, 사업유지기간, 본사 소재지 등

□ 선정기준 : 60점 이상 득한 기업 중 지원규모 내 고득점순 선발

* 최종 평가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 미선정 기업에 고득점순 예비번호 부여 및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 예정

<참고> 참가기업 선정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재무건전성 (20)	○ 재무건전성 - 부채비율(부채/자본*100)	20	17	14	11	8
		100% 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 이상
성장성 (15)	○ 매출액 - 전년대비 증가, 유지, 감소	15	10	5		
		증가	유지 (±20% 수준)	감소		
일자리창출 (25)	○ 고용인원 증가율	25	20	15	10	5
		40% 이상	20% 이상 40% 미만	1% 이상 20% 미만	0% (유지)	0%미만 (감소)
사업유지기간 (25)	○ 사업유지기간 - 설립일부터의 사업기간 * 본사 사업자등록증 기준	25	23	21	19	17
		4년 이상	3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기타 (15)	○ 비수도권 소재 여부	15	0			
		비수도권 소재 기업	수도권 소재 기업 (서울, 경기, 인천권)			
가점	○ '25년 해당 사업을 통해 인턴 연수비를 지원받은 정규직의 지속 고용 비율 50% 이상					+5
	○ 신규 지원업체					+10
감점 * '25~'26 사업 참여기업만 해당	○ 사업 포기 신청서 제출 후 사업포기					△5
	○ 최초 승인 인원 대비 1/2 미만 인원축소					△10
선정 제외	○ '25년 사업 승인 후 채용계획 변경 승인 없이 인턴 미채용 및 축소 채용					
	○ 제출서류 중 최신년도 재무상태표상 완전자본잠식회사(자본총계마이너스)					
합계(100)		총점			(점)	

- 재무건전성 : 부채비율(부채/자본*100)
 - 제출 필요서류 : '25년, '24년 재무상태표(국세청 발급 표준대차대조표 등)
 - 성장성 : $[(2025년\ 매출액 - 2024년\ 매출액)] / (2024년\ 매출액) * 100$, 소수점 이하 반올림
 - 제출 필요서류 : 재무건전성 항목 서류로 확인
 - 일자리 창출 : $[(2025년\ 12월\ 31일\ 기준\ 종업원\ 수)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종업원\ 수)]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종업원\ 수) * 100$
 - 제출 필요서류 : 고용 종업원 수 확인 가능한 4대보험 산출내역서(고용보험료)
 - 신규 업체 : 직전 4개년('23~'26) 미선정 업체
 - '25~'26년 신설 사업자 기본 점수
 - '25년 신설 사업자 (총 56점): 재무건전성(17점) + 성장성(10점) + 일자리창출(10점) + 사업유지기간(19점)
 - '26년 신설 사업자 (총 54점): 재무건전성(17점) + 성장성(10점) + 일자리창출(10점) + 사업유지기간(17점)
 - * 2025년 사업 신청기업 95개사 기준 중위값 고려하여 적용
 - * 일자리 창출 평가항목의 경우, '25년 신설 사업자는 '25.12.31 기준 4대 보험 산출내역서를 통해 종업원 고용 확인 시 최고점(25점) 부여
- ※ 서류 미제출시 해당 평가항목 0점 부여
- ※ 기선정 기업 중 감점사항 발생 업체는 금번 공고부터 감점 적용
- ※ 최종 합산 점수 경합 시, ① 농업경영체(AgriX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확인 必), ② 비수도권 기업, ③ 일자리 창출, ④ 재무 건전성, ⑤ 사업유지기간, ⑥ 성장성 순 고득점 기업 선정

2026년 식품외식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기업명	00식품	대 표 자	홍길동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법인등록번호	111111-1111111	
업종	식품제조, 외식프랜차이즈	채용 담당자	성명	
			소속	
			연락처	010-0000-0000
사업장 주소 *가점 확인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 본사 사업자등록증 기준	설립연도	0년	
가점여부	(전년도 참여기업만 대상) 정규직 전환 인원 고용유지비율 50% 이상		예 / 아니오	
	직전 3개년 참여여부		예 / 아니오	
<상세 채용계획>				
직무	경영관리	품질관리	영양사	영업관리
채용인원	00명	00명	00명	00명
채용 일자	4월	4월(0명),5월(0명)	0월	0월
채용 기간	0개월	0개월(0명),0개월(0명)	0개월	0개월
본 사업은 인턴 채용(승인)인원의 50% 이상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 전환 후 30일 이상 고용유지 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_____ (인 또는 서명)				
계획 인원 대비 채용 인원 미달 또는 사업 중도 포기 시 차년도 사업 참여에 감점 부과 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_____ (인 또는 서명)				
위 기재사항과 제출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대표자_____ (인 또는 서명)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장 귀하				

붙임2 신청기업 사전 체크리스트

- ✓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은 농식품 기업, 외식기업이 승인된 인원수에 해당하는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 후, 최소 50% 이상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 전환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사업 신청 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확인란 부분에 체크표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확인
1. 신청기업은 농식품·외식기업입니다. * 사업자 등록증 제출	
2. 신청기업은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근로자 채용 등 조건으로 금전적 지원(인건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3. 참여 근로자(인턴)는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4. 참여 대상 근로자는 내국인에 한하며, 외국인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5. 참여 근로자는 인턴십 종료 직후 정규직 근무가 가능한 자입니다.	
6. 신청기업은 참여 근로자에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7. 신청기업은 참여 근로자의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8. 참여 근로자가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해당 시, 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절차로 처벌됩니다.	
9.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자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참여 가능 근로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당해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 전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참여 중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 인턴 채용 후 채용(승인) 인원의 50% 이상 정규직 전환 미이행 및 인건비 지원 대상 조건 미이행의 경우 지원이 불가함을 숙지하였습니다.	
13. aT 푸드테크 인턴십 지원사업과 중복 선정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4. aT는 참여기업 선정을 위해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이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을 숙지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선정 이후 상기 사항에 대한 위반 적발 시 보조금 지급 제한, 반환 및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한 경우 동일한 조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확 인 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제출서류(FIS)

1. (필수)지원사업 참가신청서
2. (필수)신청기업 사전 체크리스트
3. (선택)영업등록증/허가증/신고증
 - 식품제조 가공일 경우 제출 필수
4. (필수)법인/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필수
5. (필수)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6. (필수) 2024~2025년 12월 31일 기준 4대보험 산출내역서 각 1부
 - 24년 12월 31일, '25년 12월 31일 발급분 제출
 - * '25년 신설 사업자는 '25년 12월 31일 발급분 제출
7. (필수)2024~2025년 재무상태표 각 1부
 - (선정제외) 재무상태표상 완전자본잠식회사(자본총계마이너스)
8. (필수)사업자등록증(국세청 발급 표준대차대조표 등)
9. (선택)기타서류(해당시 제출)
 - (전년도 선정기업)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경합 우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번호 포함)

〈참고〉 광역지방정부별 조례별 청년 연령 기준 (2026년 9월 현재)

광역(시·도)	구분	청년 나이	근거
특별시	서울특별시	19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 1항)
광역시	부산광역시	18세 이상 39세 이하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 1항)
	대구광역시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장 제2조 1항)
	인천광역시	18세 이상 39세 이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3조 1항)
	광주광역시	19세 이상 39세 이하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제2조 1항)
	대전광역시	18세 이상 39세 이하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장 제2조)
	울산광역시	19세 이상 39세 이하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 1항)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19세 이상 39세 이하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1장 제3조 1항)
도	경기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 1항)
	충청남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1장 3조 1항)
	충청북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 1항)
	전라남도	18세 이상 45세 이하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 3조 1항)
	경상남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 1항)
	경상북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제2조 1항)
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18세 이상 45세 이하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장 3조 1항)
	전북특별자치도	18세 이상 39세 이하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장 2조 1항)
	제주특별자치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 1항)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 조례는 차년도부터 적용 예정이며, 금번 공고는 기존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개별 조례 기준을 준용합니다.